

“상호접속등 명문화 공정경쟁환경 조성에 주력” 통신사업자 허가 관련 전자공청회

통신시장 전면개방을 앞두고 지난 7월 발표된 “통신사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기본정책 방향”에 따른 95년 사업자 선정과 관련 ‘전자공청회’가 실시되었다. 컴퓨터통신을 통해 이루어진 이 공청회를 통해 관심 있는 인사들의 자유로운 의사 개진이 이루어졌는데, 8월 16일 정보통신부가 질의문 요지를 종합정리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향후 검토가 필요하여 오늘 확정적으로 답변하지 못한 사항에 대하여는 허가신청요령 공고전까지 확정하여 공표하겠다.
특히, 2차심사방법에 대해서는 전자공청회를 통하여 제시된 의견을 포함하여 여러분의 의견을 종합검토하여 최종 확정할 예정이다.

사업자허가 신청제한

Q : 허가신청법인 중에 기존 기간통신사업자가 주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의 승인요청 절차 및 포함사항은 ?

A : 허가신청서 접수일로부터 15일 전까지 설립예정법인의 대표자명의로 허가신청 대상사업, 그 기간통신사업자의 참여사유와 주식소유현황을 첨부하여 정보통신부장관에게 승인신청을 하면된다.

Q : 지역사업자와 전국사업자를 구분하여 허가하는 경우의 지역사업자에 대한 경쟁력강화 계획은 ?

A : 신규 지역사업자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사업자간의 공정경쟁이 중요하다. 따라서 사업간 회계분리, 공정한 상호접속 보장, 지배적사업자에 대한 요금규제 등 공정경쟁관련 제도를 보완, 명문화하여 공정경쟁환경 조성에 주력할 계획이다.

Q : 중복신청시 5%미만의 지분참여를 제한하는 타당성 또는 근거는 ?

A : 통신사업에 다수기업의 참여를 보장하여 통신사업의 균형적인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것이다.

- Q : 기존 기간통신사업자(대주주 및 사실상 경영에 참여하는 구성주주포함)의 대주주 참여 가능 여부는?
- A : 타 허가신청법인의 50%미만의 지분의 범위내에서 참여가능(정보통신부장관의 사전승인 필요)하다.
- Q : 사실상 경영에 참여하지 않은 구성주주의 타 사업구역의 동일역무에 대한 5%이상 지분참여 가능 여부는?
- A : 가능하다.
- Q : 중소기업육성정책의 일환으로 CT-2, 무선호출, 무선데이터, TRS 사업에 대기업의 참여를 제한 또는 배제할 계획은?
- A : 지역사업의 경우 그 지역에 기반을 둔 중견기업 및 중소기업의 참여를 장려하고 지방 경제의 활성화에 기여토록 하기 위해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대규모기업집단의 참여를 배제할 계획이나 전국사업에 대하여는 별도의 제한을 하지 않을 계획이다.
- Q : 통신사업 참여를 시장기능에 맡길 의향은 없는지?
- A : 민간의 창의와 활력을 도입하기 위해 기술적·재정적 능력이 있고, 참여 의지가 있는 사람은 누구든지 시장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기본정책방향이나 역무에 따라서는 주파수, 번호자원등의 자연적인 제약이 있을 수 있다.
- Q : 기존 무선통신사업자는 이미 할당받은 주파수를 개발하여 새로운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으므로 금번 허가시 주파수 할당을 필요로 하는 역무에 대하여는 허가신청을 제한하는 것이 어떤지?
- A : 기 할당받은 주파수를 활용하여 새로운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역무도 있고 그렇지 않은 역무도 있다.
- Q : 실질적으로 경영에 참여하는 구성주주에 대해 통신사업 참여를 제한하는 법적 근거는?
- A : 통신사업에 있어서 특정기업의 계열화를 방지함으로써 많은 기업들이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기존 기간통신사업자를 통해 역무를 추가하도록 함으로써 기존업체의 경쟁력강화와 시너지 효과를 극대화하고자 하는 정부의 정책의지이다.
- Q : 시장규모 및 매출액 산정시 요금기준 등은?
- A : 허가신청법인에서 서비스 원가 및 투자보수에 기초하여 산출하고 산출 근거 제시, 향후 개발될 부가서비스 요금은 서비스 제공시의 관련 규정에 따라 결정해야 할 것이다.

사업자수 및 사업구역

Q : 허가대상역무에 따라 사업구역에 차이가 있는 이유는 ?

A : 허가대상역무별 사업자수 및 사업구역은 허가대상 역무의 현행시장 구조, 기존 사업자의 사업구역, 주파수 지원 및 향후 가입자 수요 등을 고려하여 결정하였다.

Q : PCS사업자수를 대폭 늘리는 것이 과연 국내 통신산업 경쟁력강화에 도움이 되는지 ?

A : 통신시장 개방에 대비하기 위해서는 가능한 한 조기에 전면적인 국내 경쟁체제를 구축하여 국내 사업자의 경쟁력을 강화시키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하여 사업자 수를 결정한 것이다.

Q : PCS사업자는 전국사업 뿐만 아니라 지역사업으로 허가하여 더 많은 사람이 참여하도록 하고 전국사업자가 컨소시엄을 구성할 경우 지역에 기반을 둔 사업자도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은 ?

A : 좀 더 검토가 필요하다.

Q : PCS사업에 대한 설비제조업체 참여문제는 ?

A : PCS사업에 대한 통신설비제조업체의 참여지분은 1/3이다. 전기통신사업법 개정('95. 4. 6)시 설비제조업체의 통신사업 참여에 대한 특별 지분제한 규정을 폐지하였다.

Q : 회선설비임대역무의 허가신청법인이 희망하는 지역은 ?

A : 전국 또는 지역 모두 가능하다.

Q : 한국통신의 복수사업 허가건과 관련하여 복수는 몇개인지 ?

A : 한국통신 복수사업허가는 국가기간통신망의 안정적 운영 및 해외 진출을 촉진하기 위해 필요한 역무에 한하여 허가신청을 허용할 예정이며, 이 경우에도 공정경쟁보장을 위한 계획서를 제출케 한 후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허가할 예정이다.

Q : 적격통과업체가 허가대상 사업자 수보다 적을 경우 추가허가 계획은 ?

A : 금년중에는 추가허가를 고려하고 있지 않다.

1차심사방법

Q : 1차심사 선정업체의 숫자는 ?

A : 1차심사 적격업체수가 지나치게 많을 경우 그 수를 적정하게 제한하는 방법을 검토중이다.

Q : 공정경쟁 및 인력양성계획은 ?

A : 한국통신의 공정경쟁에 관한 계획서는 사업계획서와 별도로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하나 1차심사에 포함된다. 인력양성계획은 연구개발 인력 및 사업수행관련인력을 포함한다.

Q : 신규 설립법인의 심사규정은 ?

A : 컨소시엄의 적격여부를 결정하기 위해서는 컨소시엄 구성주주에 대

한 심사가 필요하다고 본다.

Q : 1차심사의 6개사항 적용기준은 ?

A : 6개사항 모두 적격판정을 받아야 한다.

Q : 1차심사의 6개항목 배점기준은 ?

A : 아직 확정단계는 아니나 6개항목의 배점을 달리할 계획이며, 기술력을 심사하는 항목에 100점 만점기준으로 50점이상 부과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다.

2차심사방법

Q : 연구개발출연금 대상사업자는 ?

A : 추후에 기존 셀룰라사업자에게 PCS 주파수를 할당할 경우 연구개발 출연금 의무를 부과할 계획이다.

Q : 정보통신 발전을 위한 기술개발지원계획서 및 사업계획서 분량은 ?

A : 기술개발지원계획서는 2차 출연금심사를 위한 것으로 분량은 5쪽 이내로 제한할 예정이며, 전국사업자의 경우 사업계획서의 분량은 250 쪽은 본문만을 말한다.

Q : 출연금 심사에 대한 제안은 ?

A : 지역사업에는 대규모 기업집단의 참여를 배제하였으므로 출연금 심사시 대기업과 중소기업간 상호 경쟁은 발생하지 않을 것이며, 출연금의 적정범위 및 책정방법에 대하여는 검토중이다.

Q : 출연금 산정기준은 ?

A : 출연금 산정기준을 사업개시후 5년으로 정한 것은 종전사업자허가시 적용했던 기준을 참고하여 잠정 결정한 것이다.

Q : 출연금의 순위로 사업자가 결정될 경우 기술력판단은 ?

A : 1차심사는 자격심사로 기술력심사에 비중을 많이 둘 예정이어서 기술력이 부적격한 법인은 탈락할 것으로 생각하며 1차심사를 통과하면 동일한 자격을 가진 것으로 간주한다.

기타사항

Q : 무선접속방식은 ?

A : 정부에서는 PCS 표준을 단일표준 또는 복수표준으로 할 것인지에 대해 검토중이다.

Q : 한국통신의 상호접속에 대한 보장에 관한 것이 국제전화와 같이 설비 제공의무와 같은 범위로 제약을 가하는지 ?

A : 전기통신기본법 및 전기통신사업법의 규정에 따른다.

Q : 전국사업자에 지분참여하고 지역사업자 지배주주 참여 가능한지 ?

A : 가능하다. 단,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대규모기업집단은 지역사업참여가 불가하다.

- Q : PCS에 있어서 국제로밍을 고려할 것인지 ?
 A : 기술발전 추세와 세계적인 동향등을 감안하여 결정할 계획이다.
 Q : 각 사업자에게 할당할 주파수대역은 ?
 A : 허가신청요령 공고시 구체적으로 제시할 계획이다.
 Q : 1차심사에서 출연금 평가여부는 ?
 A : 평가하지 않는다(1차심사 통과자에 한해서 2차심사를 함).
 Q : 부속서류 제출시 영문제출 가능여부는 ?
 A : 외국어로도 제출이 가능하나 한글번역본을 동시에 제출해야 한다(한글본이 우선함).
 Q : 허가대상역무에 대한 기술 SPEC은 RFP상에서 요청되는지 아니면 허가신청법인이 자율적으로 제안하는지 ?
 A : 이미 SPEC이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르고 그 외에는 가능한 한 주파수 효율이 높은 방식에 따라 자율적으로 제안한다.
 Q : 무선데이터통신은 최소 사업자당 주파수대역이 500KHz정도 필요한 것으로 보는데 정보통신부의 주파수 할당계획은 ?
 A : 정부에서는 무선데이터통신용으로 '94. 7. 1 주파수분배 공고를 하였으며 사용주파수는 이동국 송신은 896-898MHz, 기지국 송신은 936-938MHz로서 4MHz, 채널간격 12.5KHz, 160채널이다.

무선데이터망을 이용한 부가서비스 영역문제

- Q : 기존 PAGER망에 가입된 자가 무선단말기 소지자와 통신이 사업적으로 가능한지 ?
 A : 불가능하다.
 Q : 무선데이터망을 이용한 음성서비스 허가는 언제부터인지 ?
 A : 기술발전추세와 세계적인 동향등을 감안하여 결정할 계획이다.
 Q : 무선데이터통신의 CH간격이 12.5KHz로 발표되었는데 25KHz로 변경은 안되는지 ?
 A : 변경할 계획이 없다.
 Q : 12.5KHz와 25KHz의 병용사용은 ?
 A : 불가능하다.
 Q : 기술협력의 의미는 ?
 A : 허가신청역무와 관련된 정보통신기술의 발전을 위하여 허가신청법인과 구성주주간 또는 구성주주 상호간 기술협력 및 이전계획을 말한다(원천기술 우선).
 Q : 중견기업의 정의는 ?
 A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30대 대규모 기업집단과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 외의 기업으로서 재무구조등이 건실한 기업을 의미한다. ●